



www.scsr.co.kr



CERTIFICATION OF EARTHQUAKE SAFETY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이 건물 지진에 안전한지
궁금한적 없으세요?

이젠 눈으로 확인하고 안심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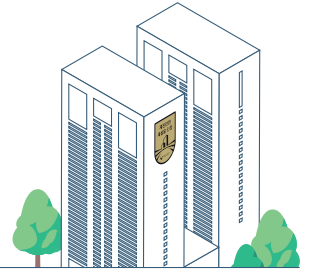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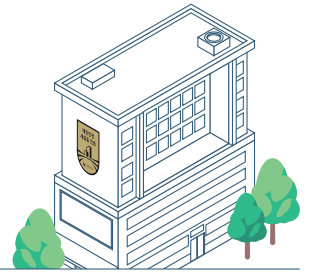


- 국내 '16년 경주 및 '17년 포항 지진으로 민간건축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공공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까지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법령 개정과 건물의 지진안전을 검증하는 전문 인증 기관(국토안전관리원, 舊한국시설안전공단) 지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2019년 3월 6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자발적 신청 독려를 위해 인증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 하는 보조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진재난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한 순간에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건물 이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건물의 가치도 높이세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개요



- 제도 개요**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
- 인증 등급** 총 3가지 등급 (내진특등급, 내진 I 등급, 내진 II 등급)
- 인증 대상** 역사, 학교,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모든 건축물 (공공·민간)



※ 소요 기간과 금액은 건축물의 연면적 및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절차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개요



사업 목적 지진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하여,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및 자부담 경감

지원 형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지원 가능

지원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소유 건축물

추진 절차 수요 확보 → 사업 추진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지급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건축물 규모별 지원 예시 (국비 60% 지방비 30% 지원 기준)

주택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연면적 85㎡ 주택	총액(100%)	1,400만 원	200만 원	1,600만 원
	정부지원(90%)	1,260만 원	180만 원	1,440만 원
	자부담(10%)	140만 원	20만 원	160만 원
상가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연면적 10,000㎡ 상가	총액(100%)	3,000만 원	500만 원	3,500만 원
	정부지원(90%)	2,700만 원	450만 원	3,150만 원
	자부담(10%)	300만 원	50만 원	350만 원
아파트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연면적 20,000㎡ 아파트	총액(100%)	3,800만 원	700만 원	4,500만 원
	정부지원(90%)	2,700만 원	630만 원	3,330만 원
	자부담(10%)	1,100만 원	70만 원	1,170만 원
공장	구분	내진성능평가	인증 수수료	합계
 연면적 50,000㎡ (1층 시설) 공장	총액(100%)	5,600만 원	1,100만 원	6,700만 원
	정부지원(90%)	2,700만 원	900만 원	3,600만 원
	자부담(10%)	2,900만 원	200만 원	3,100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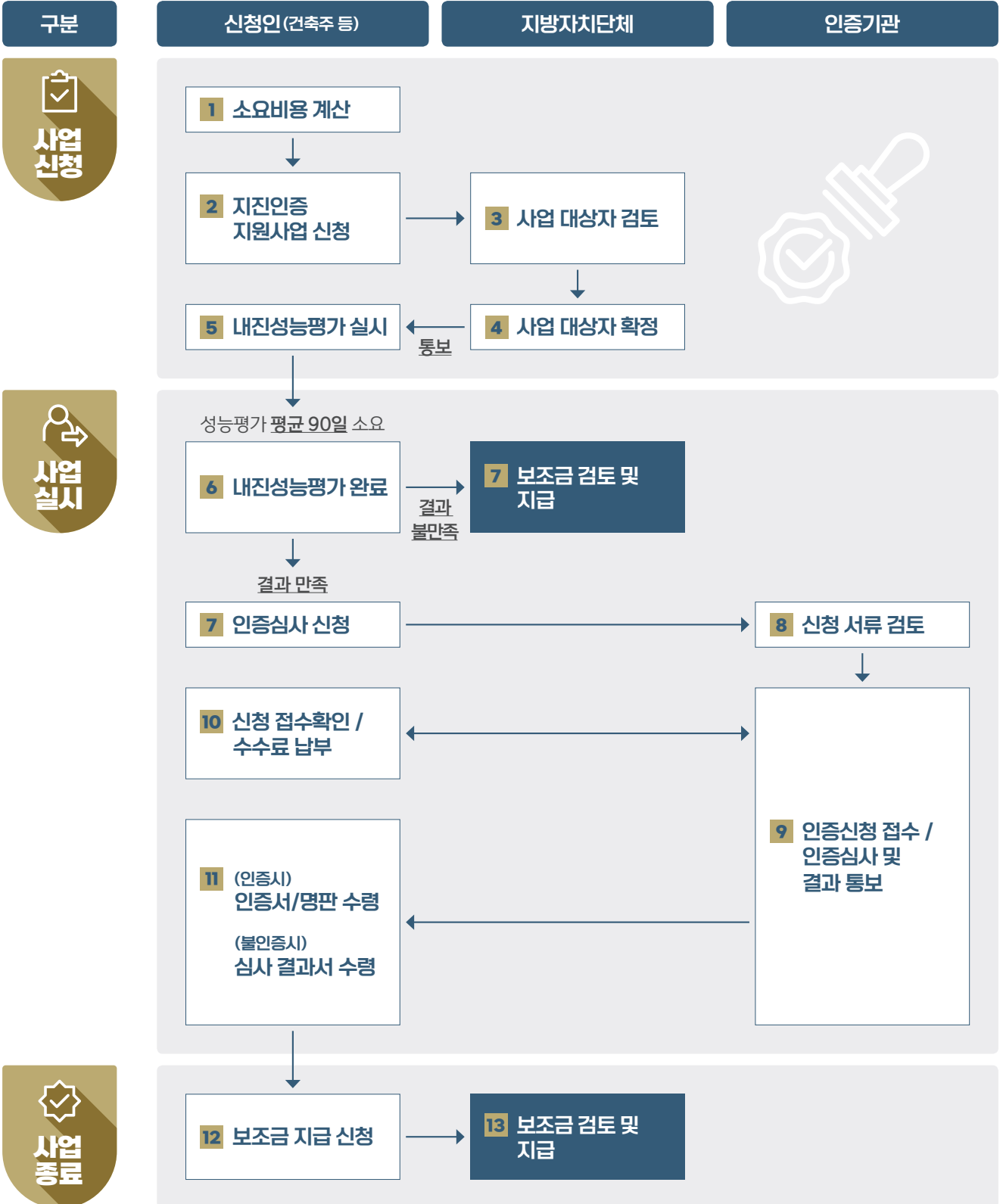
※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비용 지원율이 다를수 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 절차



지진인증 지원사업 추진 절차도



1
사업
신청

1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서 신청

신청대상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소유 건축물(공공은 제외)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지진인증 부서(8p 참조)

사업선정 해당 지자체별로 사업자 선정 절차 실시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건축물대장,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

- 과년도 연말 ~ 해당연도 연초에 **지자체별 사업자 공고 실시**(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게시)
- 지자체 여건에 따라 보조율이 상이할 수 있어, **지자체 담당부서 사전 문의 필수**

시도	정부보조율	자부담율	시도	정부보조율	자부담율
서울	90%	10%	강원	90%	10%
부산	90%	10%	충북	90%	10%
대구	100%	0%	충남	90%	10%
인천	100%	0%	전북	90%	10%
광주	90%	10%	전남	75%	25%
대전	100%	0%	경북	100%	0%
울산	90%	10%	경남	90%	10%
세종	90%	10%	제주	90%	10%
경기	90%	10%			

※ 최대지원한도 : 내진성능평가 3천만원, 인증수수료 1천만원

2-1
내진
성능평가
실시

2 1단계(내진성능평가) 실시

- 내진성능평가 용역 업체 선정

**'건축구조기술사'를 포함한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



※ 성능평가 수행 업체 선정 시 참고사항 Ⓣ

1 용역 과업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까지 포함하여 실시

사례 : 용역업체에서 인증심사 과정에서 보완자료 요청시 거절하여 불인증 발생 사례가 있어, 용역 과업을 인증심사까지 완료되었을 때 대금지급을 하는 등 인증심사를 성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장치 필요

2 내진성능평가 업체 '건축구조기술사' 보유 여부 확인

사례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아니어도 수행이 가능하나, 지진인증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자체평가서 및 직인이 필요함

-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가 없는 내진성능평가 업체 선정시 내진성능평가 후 인증 신청이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내진성능평가 **만족**

(3 인증심사) 다음단계 진행

내진성능평가 **불만족**

(내진성능평가 보조금 지급) 사업종료

2-2

인증심사
실시

3 2단계(지진인증심사) 실시

- 지진인증 심사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 신청시 필요 서류 Ⓣ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

- 1 인증 신청서
- 2 자체평가서
- 3 자체평가서 증빙서류
(내진성능평가 결과보고서, 설계도면, 계산서, 해석파일, 사진·동영상 등)
- 4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에만 해당)

내진보강 적용 건축물

- 1 내진보강 미적용 건축물 제출 서류 일체
- 2 구조 감리 보고서
- 3 구조 감리 보고서 증빙자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인증서 및 인증명판 수령

지진안전 시설물 **불인증**

심사 결과서 수령

※ 인증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요청사유서 및 재심사 수수료 납부(인증수수료의 50%)

3

사업
종료

4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 보조금 수령

- 지진인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령 신청
- ※ 보조금 수령 신청시 필요 서류 Ⓣ

- 1 국고보조금 지급 요청서
- 2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 자료
- 3 지진인증 심사결과서

※ 시도별 보조금 수령을 위한 필요 서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지진인증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령 및 사업 종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인증 혜택



신축 건축물 지진인증 시 혜택

취득세 5% 감면

- 취득세 감면 신청기간 :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취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 서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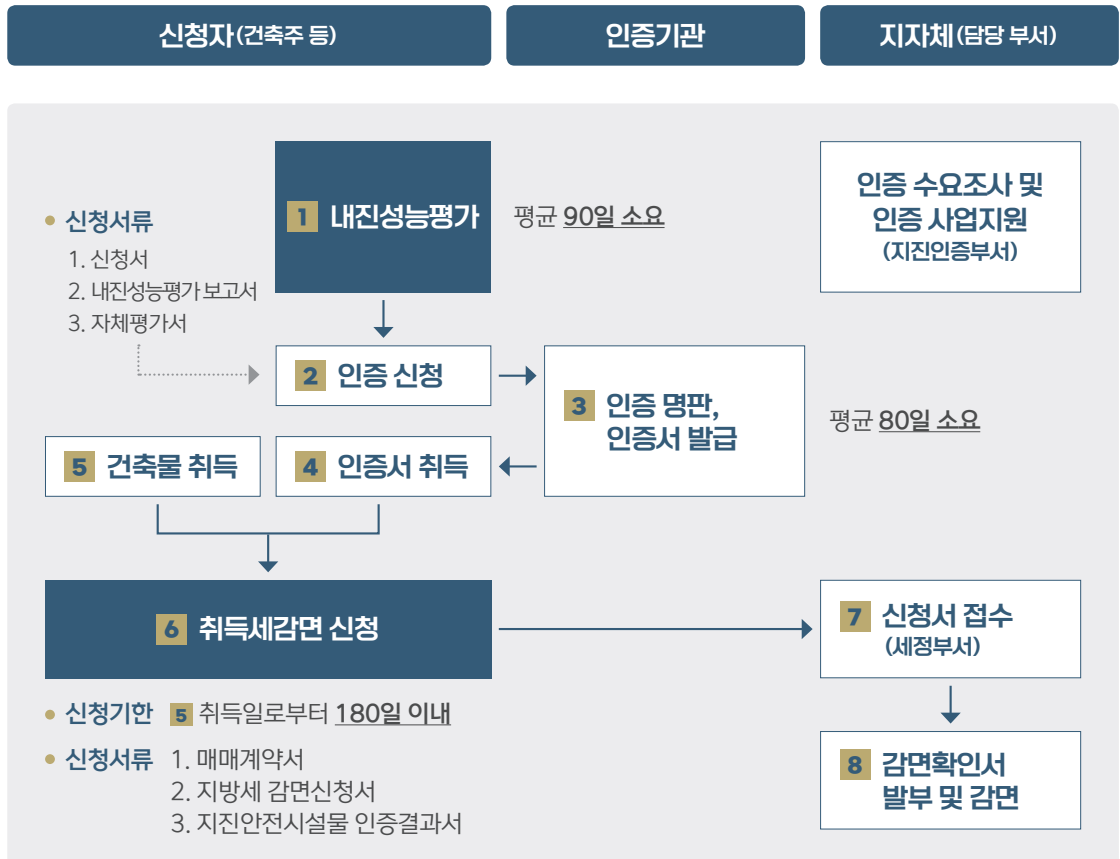
- 1 매매 계약서
- 2 지방세 감면신청서
-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서

감면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면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

* 승계받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건축물의 권리를 새로 취득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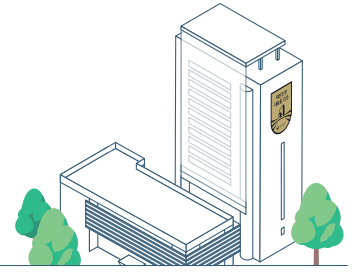
감면절차 안내 1 ~ 8 순서에 따라 진행



※ 건물 사용을 위해 취득세 先 납부 후, 이후 감면액 환급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연락처



① 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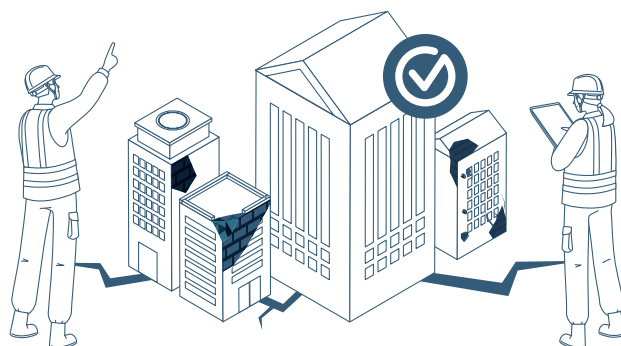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 044-205-5184 | ✉ seismicSAFE@korea.kr
- 공식 홈페이지 : <http://www.scsr.co.kr>

② 인증기관

-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 055-771-4888 | ✉ seismiccerti@kalis.or.kr

③ 지자체

시도	부서명	연락처	시도	부서명	연락처
서울	지역건축 안전센터	02-2133-6988	강원	재난대응과	033-249-3821
부산	자연재난과	051-888-2964	충북	자연재난과	043-220-2466
대구	자연재난과	053-803-1962	충남	자연재난과	041-635-2187
인천	자연재난과	032-440-3369	전북	자연재난과	063-280-4379
광주	자연재난과	062-613-2686	전남	자연재난과	061-286-3726
대전	재난관리과	042-270-5971	경북	자연재난과	054-880-2365
울산	재난관리과	052-229-4153	경남	자연재난과	055-211-2834
세종	재난관리과	044-300-3223	제주	재난대응과	064-710-3943
경기	자연재난과	031-8008-8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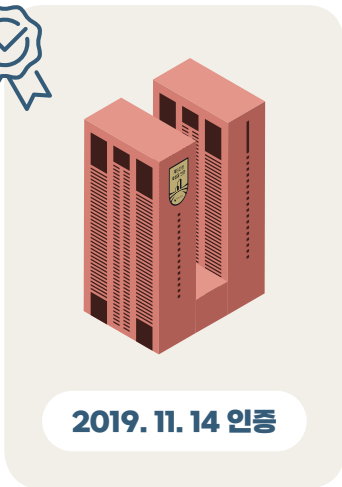
지진인증 사례 대구은행·교보타워·정원어린이집



2019. 5. 14 인증

대구은행 본점

현 내진 성능 기준에 적합한 보강을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 건축물에 근무하는 **저희 직원뿐 아니라 고객 및 사용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금융 기업,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 지진안전 시설물 1호 인증을 획득했다는 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19. 11. 14 인증

교보생명 교보타워

교보 타워는 지역 랜드마크 빌딩으로서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주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빌딩 이미지가 중요한데 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된 지진안전인증 현판을 보고 입주사분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있었고, 한결 "건물 지진안전에 안심을 느낀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보 타워 외 다른 빌딩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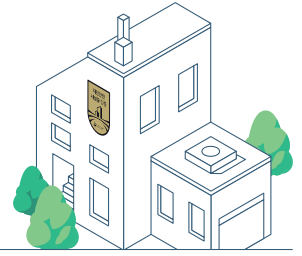
2019. 12. 24 인증

정원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 굉장히 충족되었다고 생각해요. 검증된 기관으로부터의 인증이라 학부모들에게도 입증된 시설이라는 점에서 신뢰성을 주고 직원들 또한 안전한 곳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겼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인증 사례 갤러리아·강원랜드·부산아동병원



2020. 6. 15 인증

갤러리아 백화점 진주점

최근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백화점은 다중이용시설로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인식을 주기위해 인증제에 참여하였습니다. 지진인증제는 나 개인뿐만 아니라 타인도 존중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동산적인 자산 가치도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좋은 인증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 12. 23 인증

강원 강원랜드

고객들이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설물, 이런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며, 일하는 직원들은 내가 상주하는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해방감을 느낄수 있어 만족합니다. 건물주라고 하면은 내 시설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는 방법이기에 때문에 인증을 적극 추천합니다.



2020. 11. 29 인증

부산사직 아동병원

지진인증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내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비용으로 인증제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이지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100%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FAQ

Q1 기존에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한 경우 인증 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를 재실시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관리원(인증기관)에게 사전 문의 바랍니다.

Q2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심사 결과 NG가 났을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한가요?

- 네, 모두 가능합니다.
 - 다만, 내진성능평가 비용은 인증 심사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NG 결과에 대한 사유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규칙(행안부고시)」제8조(인증 신청의 반려) 등의 경우 보조금 미지급

Q3 인증신청 방법과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양식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www.scsr.co.kr)웹페이지 또는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055-771-4888)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웹페이지 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안내(<http://scsr.co.kr>)을 참조하여 관련서식 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에 전자문서(민원24)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는 아래와 전자메일(seismiccerti@kalis.or.kr)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 건축구조기준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내진성능 평가요령에 따른 대상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 내진보강에 따른 내진저항요소가 완공도면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구조감리보고서(내진보강 시 해당)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자체평가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도면, 계산서, 해석파일, 해석결과, 사진, 동영상 등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 FAQ 참조 〉



Q4 건물주체가 동일한 다수 건축물을 사업신청해도 비용지원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 다만, 보조금 대상자는 지자체별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는 사항으로 지자체에 사전 문의 바랍니다.

Q5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정보를 알 수 있는 데가 있나요?

- 건축구조 기술사가 소속된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 정보관리 시스템(www.fms.or.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 소속 지자체 문의 등을 통해 업체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또한, 인터넷 등을 통해 검색하여 해당되는 지역의 업체에 대한 비교 분석 후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여 내진성능평가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다만, 인증심사를 위해선 건축구조기술사의 직인을 받아야 하므로, 건축구조기술사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Q6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지자체에 신청하는 시기가 있나요?

- 통상 사업수요 조사는 전년도 4월부터 지자체별로 실시한 후 사업연도 1~3월 내 보조사업자를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 따라서,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지자체에 차년도 수요로 신청한 후 인증심사까지 완료하신 후 차년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서식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건축물	건축물명			
	주 소			
	주 용 도		연면적(㎡)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성능평가 비용 지원 : 최대 2,7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0만원의 90%(국비60%, 지자체별 상이) -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평가업체를 선정하여야함(인증 심사 시 구조기술사 직인 필요) ● 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 최대 9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0만원의 90%(국비60%, 지자체별 상이) - 인증수수료는 인증심사를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함 <p>※ 유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 비용이 최대 지원비용 초과 시 초과 금액은 신청자가 부담함 2)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는 신청자가 먼저 지불하며 영수증 등 증빙서류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함 3)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성능 확보일 경우, 반드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제출서류 (사업완료 후)	내진성능평가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평가업체), 성능평가 결과 보고서, 세금계산서, 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			

본인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동의하며, 상기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견적서 별도 제출

20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신청서는 샘플 서식으로 지자체별 신청 서식 및 지원율은 상이함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1. 6. 10.>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40일 이내
1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FAX	전자우편
2 건축주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설계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4 공사시공자	회사명(대표자명)		면허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5 공사감리자	사무소명		신고번호	
	성명		자격번호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6 신청시설물	시설물명			
	소재지 주소			
	시설물 용도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 2. 지진안전 시설물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행정안전부



국토안전관리원